

☆ 국가별 수입식품 안전관리 동향

미 국

□ 미국 「식품안전현대화법」 제정('10.12.21)

➤ 식품오염 사고 대응 → 사전 예방적 안전 확보체계로 전환

* 예방적관리, 검사와 준수, 수입식품 안전입증(공급자 증명제도), 강제수거 명령

➤ 수입되기 전에 미국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공급자 증명제도 시행

* 해외공급자 검증프로그램, 제3자 감사기관 인가 등의 제도 운영하여 안전성 제고

* FDA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입식품의 반입거부

* 수입농산물이 식품안전에 부합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신속한 조사 인센티브제공

➤ '15년 10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후 추진계획

□ 유해물질 Zero-tolerance

- 허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은 불검출기준 적용

☆ 국가별 수입식품 안전관리 동향

일본

□ 수입농산물 ID관리제도 운영 [안전관리 강화]

- 수출국 ID관리 농산물 선 통관 후 모니터링 5%

* (1회 적발) 모니터링 30% → (2회) 명령전수검사 → (5%, 60건 이상)포괄적 수입금지

□ 유해물질 Positive List System : 기준 없는 성분 일괄 0.01ppm 적용

- Positive List System 시행으로 규제대상 유해물질 수 대폭 확대(2006)

*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.01ppm이상 잔류하는 식품은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

대만

□ 대만 수출 한국산 사과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 실시 후 통관

- 잔류농약허용기준 설정되지 않은 농약검출 시 부적합 처리하여 반송(Zero-tolerance)

☆ 국가별 수입식품 안전관리 동향

중 국

□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강화

➤ 라벨링표시기준 강화('13.6) 표시기준 준수

* 예방 및 치료효과 표기금지, 알러지 유발성분 표기, 유효기간 준수, 날개 포장마다 표기

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('15.10)예정

* 맹독·고독성 농약 과일·채소·차잎에 사용금지, 인터넷 구매식품 관리

인도네시아

□ 『수출·입 신선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관한 장관령』 개정('16. 2 시행)

□ 인도네시아로 신선농산물 (FFPO) 수출 시 요구사항

➤ 식품안전관리시스템 (GAP,GMP) 이 승인된 국가 : 수출 사전신고서만 제출

➤ 식품안전성검사 실험실이 등록된 국가 : 수출 사전신고서와 분석증명서(CoA) 제출

* 국가 또는 세계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(ISO/IEC 17025:2005)

☆ 국가별 수입식품 안전관리 동향

러시아

□ 한국과 양해각서 체결 (잔류농약성분, 질산염, 아질산염 안전관리)

- 러시아 수출 ID등록농가를 대상으로 5%이상 모니터링 실시 안전증명서 발급

홍콩

□ 수입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제정·시행('14.8.1)

- 국내사용농약 중 홍콩에 미등록농약 많음
- 국내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 농약도 있음 (아바멕틴 국내 0.1→ 홍콩 0.02ppm)

개도국

□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미흡한 국가가 많음

- 최근 자국 국민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Codex기준 적용, 안전증명서 요구 국가 증가